#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75 발의연월일: 2025. 4. 21.

발 의 자 : 윤준병 • 조계원 • 허성무

정동영 · 송옥주 · 박홍배

문대림 • 박희승 • 허종식

김태선 · 허 영 · 안도걸

서영교 • 백선희 의원

(14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탄 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지난 2021. 5. 21.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통과되었고,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

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973호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 는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 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

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결산서의 첨부서류) ① 제	제17조(결산서의 첨부서류) ① -
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	
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
5. ~ 12. (생 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8조의2(온실가스감축인지 결
	<u>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</u>
	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
	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
	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
	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
	<u>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</u>
	<u>다.</u>
	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
	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첨
	부되어야 한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	사항 외에 온실가스감축인지
	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